

□ 정관 일부 발취 (최근개정 2013.10.15)**제23조(임원 등)**

-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② 본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
□ 2018년 5월 이사회 2차 서면의결 발취 (2018.05.02.)**[보고안건3] 법률고문 임명**

- 배경 등기 변경, 정관 개정 등의 진행 시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법률 자문의 필요성 대두
 - 조치사항) 법률고문*으로 박성원 변호사(법률사무소 光化) 선임
- * 정관 제8조에 의거, 정회원이 아니어도 고문 선임 가능(단, 피선거권은 제한)